

[2026-20] ○○○○ 이의신청 요약

■ 사실 관계

- XXXX.XX.XX. 신청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를 취하
 - XXXX.XX.XX.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, 취득세 등 신고·납부
 - XXXX.XX.XX. 신청인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 처리
 - XXXX.XX.XX.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*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하였으나, 처분청 경정청구 거부
- * 지특법 제58조의3(창업중소기업 감면) :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부동산 감면
- XXXX.XX.XX. 신청인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제기

■ 쟁점 사항

- 사업자등록 최초 신청일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상 창업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■ 신청인 주장

- 신청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인 XXXX.XX.XX.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개시하였으나,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를 취하한 후 잔금 납부 다음 날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.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었다면 최초 신청일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XXXX.XX.XX.을 창업일로 보아야 하고, 사업자등록일이 하루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.

■ 종합의견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.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일은 XXXX.XX.XX.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그 전날인 XXXX.XX.XX.로 확인되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.